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2. 22 선고 2020나113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2. 22 선고 2020나1133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2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한지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

변론 종결2022. 9. 22.

판결 선고2022. 12. 22.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2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이 2018. 6.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8. 6. 20. 접수 제69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항소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7~8행의 "피고 B"을 "피고"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이하 제1심판결의 "피고 B"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모두 위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15행의 "될 수 없고,"와 "나아가"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8. 6. 15.경 체결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C은

2018. 6.경 1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하여 채무가 감소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만 급격한 사업 환경 변화 등 우연한 사정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 제1심판결 11쪽 3행의 "갑 제1호증" 다음에 "을나 제1, 2, 5, 6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1쪽 4~7행의 "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쪽의 "②", "③", "④"의 각 번호를 "④", "⑤", "⑥"으로 고친다.

『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2014. 12.경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까지도 작성하였으면서도, 위 각 채무의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 관하여는 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04. 6. 15.에야 피고가 D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므로,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내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2003. 12. 12. 700만 원 및 2004. 10. 5.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으로 총 3,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6.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 3. 9.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J은행에 대한 W(D의 친족으로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였다)의 채무를 인수하기까지 하였다가 2011. 3. 23. 다시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준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채무인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에도 피고가 C에 대하여 위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11쪽 16행의 "못하였을 것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2015. 5.경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차용증(을나 제2호증)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가 2015. 12. 31.인바, 소비대차계약 당시도 아니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이전에 대물변제예약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2015. 5. 하순경에 체결된 것을 고려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대물변제예약일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이전인 2015. 5.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 제1심판결 11쪽 18행의 "2015. 8.경임을"을 "2015. 5.경임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제1심에서 사해행위가 문제가 된 공장 및 부지뿐이었고 그 가액은 약 9억 원에 불과한 것에 반하여, 그 소극재산은 약 32억 원을 초과하였던바, 피고가 주장하는 수주내역 약 10억 원을 모두 C의 적극재산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히 초과한다.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이던 위 공장 및 부지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C은 그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고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수주내역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4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예슬

판사정순열

판사박재인

별지